



제299회 임시회
2011.04.2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처분재산 현황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내 북 초 이원폐교	토지	보은군 내북면	6,986.0	305,028	2011. 상반기	보은군의 전자기업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매도 요구	보 은 군	도면1
	건물	이원리 209-1	660.6	92,798				
청 성 초 능월폐교	토지	옥천군 청성면	15,575.0	242,970	2011. 상반기	충청북도의 도로관리 사업소 옥천지소로 활용 하기 위해 매도 요구	충청북도	도면2
	건물	도장리 496	1,113.1	625,351				
합 계 (4건)			24,334.7	1,266,147				

①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처분

- 폐교일자 : 1996. 3. 1.
- 재산위치 :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
- 재산현황
 - 토지 : 6,986㎡(5필지)
 - 건물 : 본관교사 외 3동 / 660.6㎡
- 추정금액 : 397,826천원
- 사유 : 보은군에서 동 폐교를 매입하여 전자기업 등 유망기업 유치

②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처분

- 폐교일자 : 2009. 3. 1.
- 재산위치 :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
- 재산현황
 - 토지 : 15,575㎡(2필지)
 - 건물 : 본관교사 외 5동 / 1,113.1㎡
- 추정금액 : 868,321천원
- 사유 : 충청북도에서 매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로 활용

5. 검토의견

□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 내북초등학교의 이원폐교 매각재산은 1953. 4. 1.설립 되어 1996. 3. 1. 폐교되었으며, 토지 6,986㎡, 건물 660.7㎡으로 매각 추정금액은 397,824천원입니다.
- 동 건물은 폐교 된지 15년이 지났고, 노후화가 심해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교육활동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집행청의 의견입니다.

- 보은군청은 이원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의 매각은 국가재산의 활용도와 공익성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매각재산은 설립당시 지역주민의 기부가 있었던 재산으로 ‘매각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는 지?’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 청성초등학교의 능월폐교 매각재산은 1945. 5. 16.설립 되어 2009. 3. 1. 폐교되었으며, 토지 15,575m², 건물 1,113.1m²으로 매각 추정금액은 868,321천원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동 재산을 향후 교육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충청북도는 동 재산을 매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이전하여 지방도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성초등학교의 능월폐교 매각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민은 물론 대국민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재산은 (주)한양에 2009. 7. 6. ~ 2014. 7. 5. 까지 임대기간 중에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